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62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이만희 · 강대식 · 김미애
서천호 · 이성권 · 엄태영
윤용근 · 김기웅 · 권영진
조배숙 · 이종배 · 박준태
김태규 · 조은희 · 안상훈
구자근 · 이소희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도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현황은 향후 보훈 정책 수립 시 주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수도법」에 따른 수도물 요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요금의 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① ~ ③ (생략) <u><신설></u></p> <p>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17조(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수도법」에 따른 수도물 요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요금의 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⑤ ----- <u>제4항까지의</u>----- ----- ----- --.</p>